

## 2023년 제7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(기념물분과)

◆ 일시 : 2023. 11. 17.(금) 14:00 ~ 14:50

◆ 장소 : 문화본부 4층 회의실

◆ 참석자 (6명)

위원장 : ○○○

위 원 :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

배석자 : ○○○ 과장, ○○○ 팀장, ○○○ 주무관

◆ 심의안건 (총 3건)

-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심의 : 1건
  - 부안군 이석수 묘역
- 등록문화재 지정 사전 심의 : 1건
  - 노량진 지하배수로
-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적정성 검토 심의 : 1건
  - 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 묘역

(개회)

○ ○○○ 위원장

그럼 2023년도 기념물분과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회의 안건이 총 세 건이네요. 그럼 먼저 현상변경 심의 건 해 주시죠.

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심의

<부안군 이석수 묘역>

(사업관계자 입장)

○ 사업관계자

사업 설명

○ ○○○ 위원장

예. 질문하실 것 있으신 분 말씀하시죠. 보완이 충분히 된 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울타리 로프는 재질이 뭔가요?

○ 사업관계자

재질은 PP로프라고 해서 플라스틱 재료인데요. 예전에 직경을 18mm 정도 된 것을 쓴 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마닐라로프랑은 다른가요?

○ 사업관계자

마닐라로프와는 다른데, 색깔을 요즘은 플라스틱 로프인데도 하얀 선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베이지색 선이 나와서 베이지색 선으로 설정해서 가급적이면 눈에 덜 띄게 했습니다. 흰색보다는 베이지색이 눈에 덜 거슬리거든요. 흰색이 훨씬 잘 보여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내구연한은 얼마나 돼요?

○ 사업관계자

내구연한은 플라스틱이기는 하지만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. 5~6년 정도 됩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예.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는 모양이죠?

○ ○○○ 과장

질문 없으면 퇴장하셔도 됩니다.

(사업관계자 퇴장)

○ ○○○ 위원장

지난번에 한 번 논의됐던 사항이라 별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계단 올라가다가 노인들이 넘어질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 수정하라고 한 내용입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경사도 많이 완만해졌네요.

○ ○○○ 위원

예. 지난번에 층계 참도 없이 돌계단으로만 짝 되어 있어서요.

○ ○○○ 과장

나무로 바꾸면 조금은 안전해질 것 같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예. 내구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니깐요.

○ ○○○ 과장

알겠습니다. 그러면 부안군 이석수 묘역은 이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.

두 번째 안건은 노량진 지하배수로에 대해서 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사전 심의 단계입니다. 이것도 제안설명을 들어보시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■ **등록문화재 지정 사전 심의**

□ **<노량진 지하배수로>**

(동작구청 담당자 및 사업관계자 입장)

○ ○○○ 위원장

노량진 지하배수로 건이죠. 설명 부탁드립니다.

○ 사업관계자

사업 설명

○ ○○○ 위원장

질문해 주시죠.

2020년 활용사업 추진을 했던 주체는 동작구입니까?

○ 동작구청 담당자

동작구청 치수과에서 주관해서 시행했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그 사이에는, 2020년 이전까지는 폐쇄된 상태였고요?

○ 동작구청 담당자

2020년 이전까지는 저희가, 201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. 그 전까지는 ‘안전한가?’를 주로 검토하고 사업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그러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,

○ 동작구청 담당자

추진을 주로 했고요. 공사를 직접 착공하지는 않았습니다.

- ○○○ 위원장  
폐쇄된 상태였고?
- 동작구청 담당자  
예. 폐쇄된 상태였습니다.
- ○○○ 위원장  
그래서 2020년부터 일반인이,
- 동작구청 담당자  
공사를 직접 시작한 것은 2020년도부터이고요. 2022년에 준공이 되어서 일반에 개방하게 되었습니다.
- ○○○ 위원장  
준공이 2022년이에요?
- 동작구청 담당자  
네.
- ○○○ 위원  
사람이 통행하게 한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죠?
- 동작구청 담당자  
예. 맞습니다. 지금도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개방되어 있습니다.
- ○○○ 위원  
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문화재 지정 시 연결통로 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?
- ○○○ 위원장  
2017년도 자료인가요?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2017년도에 그렇게 파악했다는 얘기죠? 여기 첨부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.

○ 동작구청 담당자

여기 보시면 저기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. 철도 하부는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시에 만들었던 자료였던 것 같은데 사람이 다니려면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난항이 예상된다고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이 문제는 지금 해결된 건가요?

○ 동작구청 담당자

해결이 되어서 지금 개통을 했고요.

○ ○○○ 위원

구간은 나누어져 있지만 이게 다 하나로 쪽 연결되어 있는 거죠?

○ 동작구청 담당자

예. 되게 특이하게도 다섯 개 구간이 전부 단면이 다 다릅니다. 이런 곳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야금야금 공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?

○ 동작구청 담당자

그런 것 같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그것도 동작구에서 한 건가요?

○ 동작구청 담당자

그 주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선로가 확정될 때마다 공사한 것 같은데.

- 동작구청 담당자  
노량진역 개통하고 선로 확장할 때마다 필요한 구간마다 조금씩 공사를 해서,
- ○○○ 팀장  
저 위쪽 노량진수산시장 쪽이 강이니까 배수를 한 시설로 보입니다.
- ○○○ 위원장  
시설을 그렇게 한 주체가 동작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.
- 동작구청 담당자  
문화재로서 하기 위해서 개통하기 위한 저희 동작구 치수과에서 한 것이고 발견하기 전까지의 공사는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.
- ○○○ 위원장  
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요?
- ○○○ 위원  
선로와 관계된 거니까 철도청이나 철도본부...
- ○○○ 팀장  
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2008년도에 발견이 된 겁니다.
- ○○○ 위원장  
그럼 앞으로 이 유지·관리는 전적으로 동작구에서 책임지는 겁니까?
- ○○○ 팀장  
네.
- ○○○ 위원  
답사 대상자를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? 건축학을 하시는 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, 아니면 그냥 일반인을 생각하시는 거예요?

○ ○○○ 위원장

일반인이겠죠.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요.

○ 동작구청 담당자

노량진수산시장으로 갈 수 있는 진입로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 
아시면 수산시장 가시는 분들이 들러서 봐주시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 
으로 추진한 겁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실제로 저기를 다닐 수가 있나요?

○ 동작구청 담당자

예. 다닐 수 있습니다.

○ ○○○ 팀장

현장 조사위원 중에 이것을 전문으로 하신 분이 공사가 설계하고 이런 게  
되게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. 16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현장 진입로  
하고 17페이지 일반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라든지 시설정비가  
현재는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원래는 등록이든 지정을 하고 보통 이런  
사업을 하는데 먼저 해놓은 상황입니다. 공사도 원형을 최대한 남겨서 공사도  
되게 잘 되어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. 17페이지 우측 하단에 천장부에  
심지라고 하는 부분이 붙어 있는데 구조 보강재들입니다. 조금 약한 부분은  
따로 보강이 되어 있고요. 안전점검 등을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우리나라에 이런 게 또 있나요?

○ ○○○ 팀장

시청광장 지하배수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기념물로 되  
어 있습니다.

○ ○○○ 과장

그런데 차이점은 시청광장 지하배수로는 현재도 활용되는 관로이고 지금

이곳은 이런 것으로 쓰지 않는 것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아까 설명하셨을 때 일부 하수가 아직 흐른다고 하지 않았나요?

○ 동작구청 담당자

하수가 흐르는데요. 밑에 배수펌프를 설치해서 하수를 밑으로 빼고 있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지대가 낮은 곳이죠?

○ 동작구청 담당자

지하 4m에 위치해 있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동네 자체가 좀 낮죠?

○ 동작구청 담당자

네. 낮습니다. 한강 샛강 쪽에 접해 있기 때문에 낮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그러면 비가 오면 폐쇄하나요?

○ 동작구청 담당자

펌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기에는 혹시 모를 사태로 폐쇄하고 있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동작구에서는 명칭을 노량진 지하배수로라고 한 건가요? 노량진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.

○ 동작구청 담당자

노량진수산시장이 특징적이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- ○○○ 위원  
역과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?
- 동작구청 담당자  
역하교의 거리는 걸어서 3분 내외입니다.
- ○○○ 위원  
철도와 관련된 문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. 만약에 이게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명확하게 특정해줘야 할 텐데요.
- ○○○ 위원장  
그러니까요. 지금 정식 지정 명칭이 '노량진 지하배수로'라고 한 거죠?
- 동작구청 담당자  
예. 그렇게 붙여 났습니다.
- ○○○ 위원  
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요.
- ○○○ 위원장  
그렇겠네요. 명칭 문제가 있겠네요. 지정하려면 그게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요.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가 충분하지는 않네요.
- ○○○ 과장  
그러면 이 건은 여기서 바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명칭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명칭 부분을 심의해볼 수는 있겠습니다.
- ○○○ 위원장  
급하지 않나요?
- 동작구청 담당자  
예. 이미 개통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는 급

하지 않습니다.

(동작구청 담당자 및 사업관계자 퇴장)

○ ○○○ 위원장

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텐데 명칭은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?

○ ○○○ 과장

동작구에 명칭에 대해서 여러 안을 가져오라고 하고 가중에서 가장 철도나 말씀하신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다시 한 번 재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명칭하고 우리 분과 위원회의 위원 한 분 중에 건축 쪽에 가까우신 분이 현장 실사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네요. 다들 직접 안 가보신 분들이라서요.

○ ○○○ 위원

현장실사는 건축분과에서 하고 등록 심의는 기념물분과에서 하니까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.

○ ○○○ 과장

그렇네요.

○ ○○○ 팀장

그 전에 아무래도 이것은 전공으로 하다 보니까.

○ ○○○ 과장

그러면 기념물분과 위원님들 중에 저희가 모셔서 다녀오겠습니다. 그러면 위원님들 현장 실사하는 부분하고 동작구청에 명칭은 별도로 검토하라는 조건으로 보류를 해놓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다음은 세 번째입니다.

○ ○○○ 과장

세 번째 안건입니다. 26페이지 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 묘역 보호구역을 축소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.

■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적정성 검토 심의

□ <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 묘역>

○ ○○○ 주무관

사업 설명

○ ○○○ 위원

예. 그때 세 분과 같이 가서 둘러봤는데 좌측 앞으로는 보호구역 자체를 설정하기 어려운 현재 상태인 거고요. 참고자료 2번으로 보시면 오른쪽 산 능선이 원래는 광릉부원군 묘소의 좌청룡 능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좌청룡 능선이 약간 미흡하기는 한데 이 일대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당시에 같이 포함시켜서 문중에서 했던 건데 그 이후에 후손 묘소들이 일부 계속 들어오게 되고 무슨 건축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사실 다른 여러 건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여러 규제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겹쳐 있거든요. 저희가 문화재 구역을 해제시킨다 해서 문중 쪽에서 실익이 없는 상태인데요.

○ ○○○ 위원

운동시설 주차장 등은 누가 만든 거예요?

○ ○○○ 위원

그때 나온 문중 사람의 말에 의하면 “원래 동네 사람들이 하던 것이다.”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이렇게 지정했으면 오히려 정비를 해야 하는 건데 시설이 들어섰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관리소홀이죠.

- ○○○ 과장  
그러니까 여기 신청한 것을 보면 배드민턴 클럽에서 요청하니까 사용을 승낙해줬어요.
- ○○○ 위원장  
허락한 것은 구에서 한 건가요?
- ○○○ 위원  
종회에서요. 자기 땅이니까.
- ○○○ 과장  
종회의 땅이니까 종회에서 허락해줬어요.
- ○○○ 위원장  
그거 할 때 이게 지정문화재인데.
- ○○○ 위원  
그 당시는 아니고요. 배드민턴 장을 만든 것은 1980년대이고 문화재가 된 것은 1990년대이고.
- ○○○ 위원  
배드민턴 장이 있는 상태에서 문화재 지정이 가능해요?
- ○○○ 위원  
그때는 건축물 같은 게 없었고요. 그냥 야외에서 네트만 설치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.
- ○○○ 팀장  
실제로 등산로 같이 쓰고 있어요. 그린웨이라고 있어서 등산객들이 가끔 있더라고요. 이게 조그만 동산인데 산책 겸 다니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는데 어쨌든 방점은 활용하고 싶으니 보호구역을 축소해달라고 하는 겁니다.
- ○○○ 위원장

위치가 좋네요.

○ ○○○ 팀장

그런데 바로 옆에 정수장이 있어서 사실 규제는 되게 많은 편입니다. 아리수 정수장과 군사지역이 있고 산림 보호구역이어서 하여튼 뭘 할 수는 없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자연녹지 지역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현장조사를 갔던 세 위원의 의견은 이것을 해제해 줄 이유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땅 주인의 입장에서 이 문서를 보면서 '자본주의 사회에서 나 같아도 신청하겠다.'는 생각이 들었어요.

○ ○○○ 위원

다른 보호구역에 비해서 크게 잡혔어요. 특별하게 이것을 해제해 줄 만한 근거가 없더라고요.

○ ○○○ 과장

신청을 할 때도 본인들이 다 동의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그런데 신청했을 때 종손 사람과 지금과 조금 다르죠.

○ ○○○ 과장

네.

○ ○○○ 위원장

그런데 1993년도에 지정할 때는 종중에서 동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. 종중 회장이 지금 바뀌었겠죠. 세대가 바뀌었겠죠.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종중도 법인인가요?

○ ○○○ 과장

민법상 법인격이 없는 사단법인 이런 식일 겁니다.

○ ○○○ 팀장

이것도 1993년도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임야이고 산지이고 그런데, 그래서 정수장도 지었는데 점점 지역이 넓어지고, 주변에 거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니까요.

○ ○○○ 위원장

그러면 이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까?

○ ○○○ 과장

저희는 한 번도 보호구역을 축소해 준 적이 없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뭔가 스터디 한 후에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. 계속 연달아서 나올 텐데요.

○ ○○○ 과장

예.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. 사실 이것을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.

○ ○○○ 위원장

좀 스터디를 해야 할 것 같아요.

○ ○○○ 위원

그 당시만 해도 우리 집안 구역이 문화재라고 하면 자긍심도 있고 하니까 그냥 오케이를 했는데 갈수록 산이 아파트로 변하는 시대가 되니까 고민들을 하게 되죠. 또 은평구 같은 곳은 천지개벽하는 곳이잖아요.

○ ○○○ 위원장

그러면 시의 입장은 어떠십니까? 이 사례를 특히 다른 지방보다 서울은 이런 게 굉장히 많던데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.

○ ○○○ 과장

그렇죠. 그런데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증명되거나 그러기 전에는 그냥 자의적으로 뭘 해제를 해 주고 이런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그러니까요. 그렇다고 그냥 전혀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.

○ ○○○ 과장

네. 그렇습니다.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오늘 바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이것도 스터디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그러니까요.

○ ○○○ 과장

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연구해보시고 그것을 둘러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그러니까요. 그렇게 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

○ ○○○ 과장

예. 지금 결정하시는 건 어려운 겁니다. 지금 이런 건 누구도 결정하기 쉽지 않은 건이라서 우선 서울시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이런 건들을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들어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는 것으로 하시죠.

○ ○○○ 위원장

예. 그렇게 정하시죠.

○ ○○○ 위원

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좋은데 저는 일단 땅 주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여기

는 다 나무지. 부원군 묘는 저 끝에 있고 그 중간에 산이 있고 이쪽인데 이것을 해제해달라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.

○ ○○○ 과장

그렇죠.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것 하나로 끝나면 모르는데 앞으로 계속 있겠죠.

○ ○○○ 과장

계속 있을 겁니다. 이것 말고도 꽤 많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거꾸로 되어 있거든요. 제가 직접 관련된 건데 중종대왕 자손의 풍산군 묘라고 판교에 있었어요. 등록이 안 된 상태겠죠. 그런데 종중에서의 의견이 일부는 그 땅을 팔아서, 그때가 한참 개발할 때니까 아시잖아요. 그것을 팔자는 건데 또 다른 종중의 어른들은 ‘그것을 당연히 보존해야지.’ 해서 오히려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신청을 해서 막았어요. 그래서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사례가 됐는데 국무총리실에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. 이게 문중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. 이런 건이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까?

○ ○○○ 팀장

제가 알기로는 20건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. 서울 외곽인 방화동 쪽에도 묘역이 꽤 있고요. 남쪽에도 양평대군 이런 묘역도 있고 꽤 있습니다. 그 전에 경기도로 밀려났던 곳이 서울지역으로 거의 들어와서요. 그것을 저희가 조사해보겠습니다.

○ ○○○ 과장

현황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조금 더 의견을 다른 분들한테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혼자 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. 이것은 용역을 줘야 할 것 같은데요. 우

선 데이터부터 확보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미리 선제적으로.

○ ○○○ 과장

알겠습니다. 그러면 묘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를 놓고 토론하시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그러시죠.

○ ○○○ 위원

문중에서도 조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.

○ ○○○ 위원장

예. 문중의 구성원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.

○ ○○○ 과장

다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달라지기 때문에. 그런데 그쪽의 의견대로 다 하는 내용은 아니라 우선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필요하겠습니다.

○ ○○○ 주무관

그날 조사를 나갔을 때 나오셨던 분께서는 과거에 여기에 신도비를 만들고 싶어서 현상변경 신청을 했는데 통과가 안 됐던 것 같아요.

○ ○○○ 위원

후손 묘소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데도 이렇게 쓸 수가 있었던 건가요?

○ ○○○ 과장

아마 당시에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묘역을 산 능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계속 써왔던 것 같아요. 이쪽 후손 묘역으로 된 쪽은 지금부터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...

○ ○○○ 과장

그렇죠. 문화재 지정 당시에도 있었을 텐데 문화재는 이쪽 광릉부원군파 묘역 쪽만 지정이 된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묘소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32쪽의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지정된 구역 아니에요?

○ ○○○ 과장

후손 묘는 아닙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후손 묘는 아니에요. 반대쪽이에요.

○ ○○○ 팀장

특이하게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게 문화재입니다.

○ ○○○ 주무관

노란색으로 된 게 문화재로 지정된 묘소이고 이 아래쪽에 후손들의 묘소가 있는데요.

○ ○○○ 위원장

여기에 보면 부원군이라고 했죠? 부원군의 무덤 말고 다른 분의 무덤도 문화재로 지정됐다는 건데 그럼 명칭도 문제가 있네요.

○ ○○○ 과장

광주이씨 광릉부원군‘파’ 묘역으로 되어 있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부원군만이 아니고 부원군파 묘역이군요. 묘역이 이렇게 지정되는 경우도 많습니까?

○ ○○○ 과장

예. 묘역은 많이 있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대개 부원군 묘 이렇게 하지 않고?

○ ○○○ 과장

부원군 자체만 하지 않고 이렇게 전체로 넓게 합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부원군의 아들, 손자까지 관직을 해서 석물까지 다 해놓고 그러면 그 석물의 중요성 때문에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지번이 산12-1, 12-2로 같이 묶였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로 했던 것 같아요.

○ ○○○ 팀장

면적이 2,279㎡인데요. 이게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.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들이 있습니다. 거기가 지금 지정된 거예요. 2,279㎡라서 이렇게 영역으로 지정이 된 게 아니라 문화재 각각 묘지하고 석물들의 영역을 지정한 거예요. 묘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 그래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사실 이것은 묘역의 차원에서 보면 지정을 잘못된 거예요. 사적 개념으로 바운더리로 묶어야 했는데 지점별로만 해놨어요.

○ ○○○ 팀장

분묘 12기하고 석물 41기가 바운더리로 지정했습니다.

○ ○○○ 과장

처음에 했을 때는 기념물로 하지 않고 석물 중심으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에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석물을 하나하나 하기에는 힘드니까 그것을 넓게 지정했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그러니까 그것도 정비를 해야 하겠네요. 기념물이라는 것은 사적 개념이죠?

○ ○○○ 과장

예. 맞습니다.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게 정비를 하려고 하면 바로 재산권 문제부터 걸려버리니까 특혜 문제가 걸립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그런데 하여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적인 것은 정리를 해놓으셔야겠네요.

○ ○○○ 과장

예.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지금 기념물인지 유형문화재인지도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

○ ○○○ 과장

맞습니다. 사실 정확하게 보면 석물이라고 하면 유형문화재로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기념물이 되는 게 맞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그러니까 묘역이라고 해놓고 실제 무덤별로 지정을 해놓고, 그러면 후손들 무덤은 누군지는 다 안다는 얘기네요.

○ ○○○ 과장

그렇죠.

○ ○○○ 위원

예. 비석이 다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또 부원군 묘 뒤로 온 사람들의

무덤은 이 주변 개발을 할 때 옮겨온 것도 있어요. 옮겨왔는데 옮겨온 무덤의 석물들이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유추하건대 그 석물을 보호하자고 된 거죠.

○ ○○○ 과장

처음에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때는 석물이나 비석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봤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조선시대 무덤 배치도와는 상당히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.

○ ○○○ 위원장

그런 개념이면 풍수나 경관을 볼 필요도 없네요.

○ ○○○ 위원

예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.

○ ○○○ 위원

그런데 무덤을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죠. 건축물 같은 것은 가서 눈으로 보면 되는데.

○ ○○○ 위원장

그런데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. 산중에 삼국시대 고분군이 밀집되어 있는 것보다는 수월한데 그것도 다 분포조사나 정밀조사를 한 사례가 많거든요. 이 정도 데이터 조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텐데요.

○ ○○○ 과장

저희가 묘역 관련해서는 따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체적으로,

○ ○○○ 위원장

그래야겠네요. 앞으로 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.

○ ○○○ 과장

그럴 것 같습니다. 서울시의 방향을 잡는 것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계속 들어봐서 하겠습니다.

○ ○○○ 팀장

문화재청 의견도 들어봐야 합니다.

○ ○○○ 위원

경기도가 이 사례가 가장 많을 것 같거든요.

○ ○○○ 위원

이게 나중에 옮겨 온 게 아니면 되게 특이한 구성이에요. 하나씩 찍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지만 묘역으로 할 경우에 언제 형성이 됐는지가 특징이 되면 특이한 사례입니다.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자체가. 왜냐면 앞 시기에는 동일 성씨를 같이 매장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, 바로 집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형성 시기가 어디냐. 이런 것 자체로 이게 동일 성씨가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석물로는 저는 잘 모르겠고 이 가치를 언제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.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반대쪽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다른 파급효과 때문에 그 원칙이 세워진 다음에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.

○ ○○○ 과장

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것은 보류해놓고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묘역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시고요.

○ ○○○ 위원장

이것은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.

○ ○○○ 과장

이것은 자세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이 건도 보류로 정리해놓고 진행하겠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예. 다 끝났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지만 정비해야 할 것을 앞으로 좀 봐서 아까 말씀하신 유형문화재하고 기념물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번 연구용역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

○ ○○○ 과장

알겠습니다. 이것도 포함해서 연구사업을 하겠습니다.

○ ○○○ 위원장

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 오늘 회의 수고하셨습니다.

(산회)